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6 - 88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존속기한 설정.

2. 주요내용

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제5조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참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 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6. 9. 8. ~ 9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동의

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동의

4)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: 기금존속기한 연장 적정

5)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- 6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7)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”를 “제4조”로, “5년으로”를 “2021년 12월 31일까지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<u>5년</u>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제4조</u> ----- ----- ----- <u>2021년 12월 31일</u> <u>까지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 개정(안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8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이소희
연 락 처	02-3153-8515